

제329회 도의회 임시회

제1차 건설소방위원회

2022. 8. 25.(목)

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건 설 소 방 위 원 회

전 문 위 원 실

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창기 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: 김창기 · 허 복 · 남진복 · 박순범 · 한창화 · 이우청 ·
백순창 · 박승직 · 김경숙 · 김홍구의원 (10명)

2. 개정이유

○ 건축안전 업무를 체계적·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상북도 지역
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
건설현장의 효과적인 안전 관리 및 건설사고 예방을 도모
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경상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8조의5)

4. 관련법령

○ 「건축법」 제87조의2,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의3

5. 관련부서 협의

- 법제심사: 불임
- 규제심사: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- 부패영향평가: 불임
- 해당부서 검토의견: 불임
-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불임

6. 입법예고 결과

- 예고방법: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
- 예고기간: 2022. 8. 18. ~ 8. 23.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-67호
- 의견제출: 의견 없음

7. 검토의견

가. 조례개정 필요성

- 「건축법」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건축안전 업무를 체계적·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상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효과적인 안전 관리 및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함

나. 조례안의 주요 내용

- 경상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
(안 제8조의5)

다. 종합의견

- 금번 「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상위법령인 「건축법」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건축안전 업무를 체계적·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상북도 지역건축안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현장의 효과적인 안전 관리 및 건설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
- 개정 취지와 내용, 관계부서 협의의견 반영 등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, 비용추계는 향후 5년간 1,190백만원의 소요비용이 추가 될 것이라고 추계되므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·운영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함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